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의 담배소비세 면세대상 확대〉

■ 윤후덕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4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의 담배소비세 면세대상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9.
3. 회부연월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Ⅲ. 검토의견

1.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의 담배소비세 면세대상 확대

개정안은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의 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을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외국국적의 민간인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민간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4조(과세면제) ① ----- ----- ----- -----.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1. (현행과 같음)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2. ----- -----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가. (현행과 같음)
나. <u>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u> 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 <u>민간인</u> ----- -----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다. (현행과 같음)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데,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인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담배소비세 면제의 혜택을 주한 외국군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의 민간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의 민간인과 그 가족까지 확대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동 담배소비세 면제규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라 함)의 이행차원에서 정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제13조(비세출자금기관)¹⁾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군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비세출자금기관)

1. (가)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판매점, 식당, 극장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제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조세관리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한외국군 종사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일치시킬 것인지, 대한민국 국적의 주한 외국군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보다 확대할 것인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한외국군 종사자는 규제 제외 대상으로서 보호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협정 이행 차원에서 내국인까지 면세담배를 공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